

대전광역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4
----------	-----

제출년월일 : '95. 4.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한바 있으나 적용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시 감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하도록 함 (안 제4조)
- 나. 「납기한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납부·통지·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7조)
- 다. 지방세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함 (안 제17조등)
- 라. 지하수의 정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안 제77조)

3.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나. 관계법령 : 생략
- 다. 합 의 : '95. 2. 13,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준칙 시달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9조 및 제9조의2”를 “제9조”로 한다.

제6조중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납기한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기한”으로, “납기 전”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납기한”을 “기한”으로 하고, “납기한의 익일부터”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로,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납기한”을 “기한”으로 하고, “납기한의 연장”을 “연장된”으로, “납기한을”를 “다시”로 하는, 동조 제5항중 “납기한”을 “신고납부기한”으로 하고, “가산금은”은 “가산세는”으로, “징수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 중 “법 제 107조 내지 제110조와 법 제261조 내지 제291조”를 “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로 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중 “법 제261조 내지 제291조”를 “법 제127조 내지 128조”로 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중 “제32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5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중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을 “법 제238조의2”로 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65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중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74조의 제목중 “비과세,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중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p>	<p>제4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 ----- 제 9조 ----- ----- ----- -----</p>	<p>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u>구청장</u>(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한다.</p>	<p>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 ----- ----- ----- ----- <u>구청장</u> ----- ----- ----- -----</p>	<p>제7조 (<u>납기한의 연장</u>)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u>납부 또는 납입 기한의 연장</u>을 받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u>납기전까지</u>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 (<u>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u>) --- ----- ----- ----- <u>기한</u> ----- ----- ----- ----- <u>기한이 만료되기 전</u> ----- -----</p>

현행	개정안
<p>110조와 법 제261조 내지 제2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 ----- <u>비과세</u> ----- ----- ----- ----- ----- -----</p> <p>1~4. (현행과 같음)</p>
<p>제21조 (광산용 임목취득의 면세신청) 법 제10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광업권 설정자 또는 광산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취득자의 주소·거소·성명 또는 명칭</p> <p>2. 취득물건의 소재지</p> <p>3. 취득년월일·벌채허가년월 및 벌채기간</p> <p>4. 수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p> <p>5. 기타 참고사항</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제24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61조 내지 제2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제24조 (비과세 -----) 법 제127조 내지 제128조 -----) 비과세를 -----</p> <p>1~4. (현행과 같음)</p>
<p>제32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34조 (감면결정통지) 구청장은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4조 (감면결정통지) -----</p> <p>----- 제31조 -----</p>

현행	개정안
<p>제55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u>비과세 또는 감면</u>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5. (생략)</p>	<p>제55조 (<u>비과세</u> -----) 법 제238조의2 -----</p> <p><u>비과세</u> -----</p> <p>1~5. (현행과 같음)</p>
<p>제65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세를 <u>비과세 또는 감면</u>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지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5. (생략)</p>	<p>제65조 (<u>비과세</u> -----) -----</p> <p>----- <u>비과세</u> -----</p> <p>1~5. (현행과 같음)</p>
<p>제74조 (<u>비과세</u>,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비과세 또는 감면</u>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4조 (<u>비과세</u> -----) -----</p> <p>----- <u>비과세</u> -----</p>

현행	개정안
<p>1~4. (생략)</p> <p>제77조 (정의) 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지하수'라 함은 채수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판매하는 것과 온천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채수한 온천수를 목욕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p>2. '음용수'라 함은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지하에서 채취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u><삭제></u></p>